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14168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해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29.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와 사이에 경북 의성군 D 소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기술용역계약서

○ 용역명 : 경북 의성군 D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 및 계획승인신청/실시계획 인가

에 따른 설계용역

○ 계약금액 : 13억 원, 부가세 별도

○ 계약기간 : 2019. 11. 29. ~ 산업단지 승인시까지

기술용역 일반조건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경북 의성군 E 일원에「경북 의성군 D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 및 계획승인신청/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산업단지에 관련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관련자료 제출 등)

1. 원고는 필요한 경우에 피고의 용역수행의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피고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원고는 피고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설명자료 작성을 위한 각종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2. 원고는 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피고의 요청에 의거 피고에게 제공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업무범위, 자료협조 등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원고의 계약 해제해지)

3. 과업수행이 극지 부진하여 기한까지 과업완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단, 행정업무지연에 따른 처리기간은 제외)

제12조(피고의 계약 해제해지)

1.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2) 원고가 피고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여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14조(용역업무 중단시의 도서작성비용 정산지급)

1. 제12조에 의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용역비를 협의하여 지급기로 한다.

2. 제11조에 의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의 손실에 대하여 협의하여 보상기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으로 2019. 12. 30. 1억 원, 2020. 1. 23. 5,0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9. 12. 31.경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경주시장은 2019. 4. 26.경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용역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제목 :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2분기 변경수요 제출 요청 및 수요조회기간

안내

2.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에서는 산업단지의 지역별 초과 공급 가능성에 대비하여 산업단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단지 수급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3분기 변경수요 제출 건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검토를 위하여 제출기간 1개월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본요건

- 1) 실수요 100% 충족 및 토지사용 동의 50% 이상
- 2) 산업단지계획 신청도서 구비(지정계획 반영년도 내 신청 가능하여야 함)
- 3) 민원으로 개발 장기지연 우려 등이 없을 것
- 4) 사업시행자 요건, 실수요검증 및 토지동의서(붙임 양식) 등 입증자료 확인

검토

- 5) 사전 수요검증 등은 도 및 시군 합동으로 개최

라. 경상북도지사는 2020. 1. 22.경 위 공문의 취지로 유사한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1분기) 변경수요제출 및 수요조회기간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경주시장(기업지원과장) 등에게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D일반산업단지 관련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피고 발송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3. 본 사로 제출된 사업시행자 관련 자료 검토 중 국토교통부 및 경상북도에서 2019년 4분기 지정계획 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해당하여 공동시행사 확인 및 검토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이 10배를 초과되고, 일부 광역시도만이 실수요자 100%(○○외 ○○개사)로 산업단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음
- 승인시 사업시행자 사용부지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이 무분별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침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는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실수요자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실 입주기업 여부, 실 공장보다 과도한 공장부지 신청 여부 등)가 이루어지며, SPC방식의 선호가 예상됨
- 이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의 공동 사업시행자에 대한 추가 및 검토가 필요함

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의성 D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사업시행자 관련자료,

편입토지조서, 산업단지 관련도면 등을 작성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산업단지지정권자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복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 등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업무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과업수행이 극지 부진하여 기한까지 과업완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동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앞서 본 공문의 내용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100% 실제로 사용하고, 50% 이상의 토지사용동의를 받아야 실시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음으로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을 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위 산업단지로 편입될 토지에 대한 '매입자' 내지 '사용승낙을 받은 자'를 원고가 아닌 다른 공동개발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와 같은 협조 내지 필수적인 자료 제출을 받지 못하여 추가적인 절차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미신청 등은 피고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③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남은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1) 산업시설용지

2) 법 제2조 제9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9, 11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시행사에서 원고가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산업단지로 편입될 토지에 대한 '매수인' 내지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을 사업의 시행자'는 위 공동시행사들 내지 그 중 하나의 회사가 아닌 '원고'로 남아 있는바, 그로 인하여 앞서 본 공문에서 지정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기본요건' 중 하나인 사업시행자 실수요 100% 충족 내지 토지사용 동의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③ 위와 같은 요건 구비를 위한 조치는 피고가 아닌 원고 측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와 관련된 조치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도 과거에 그러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혹은 장래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예정이니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할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④ 원고는 2012년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더불어 앞서 본 피고 발송 공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 측 지배하에 있는 사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승